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종섭 (국방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방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중요시설의 방호인력의 범위를 청원경찰, 특수경비원,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화기(個人火器)를 휴대 및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, 국가중요시설의 방호인력 및 직원에 대한 화생방 방호물자를 확보하도록 국가중요시설 관리자의 업무를 추가하는 한편,

중앙협의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한 경우 화상회의의 방식으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4. 19. ~ 5. 31.,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중앙협의회의 회의는 화상회의의 방식(전자투표를 포함한다)으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화상회의의 참여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21조제1항제1호가목 중 “연대장급”을 “여단장급”으로 한다.

제3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제1호 가목 전단 중 “청원경찰, 특수경비원,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 등 방호인력”을 “제1항에 따른 자체방호인력”으로 하며, 같은 목 후단 중 “개인화기(個人火器)”를 “개인화기”로 하고,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관리자(소유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”를 “관리자”로 한다.

다. 제1항에 따른 자체방호인력 및 기타 직원에 대한 화생방 방호물자의 확보 등 필요한 대비책의 마련

- ①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(소유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방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

람을 자체방호인력으로 운용하여야 한다.

1. 청원경찰
2. 특수경비원
3.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화기(個人火器)를 휴대 및 사용할 수 있는 사람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(중앙협의회회의 소집 등) ① · ② (생략) <u><신설></u>	제7조(중앙협의회회의 소집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중앙협의회회의 회의는 화상회의의 방식(전자투표를 포함한다)으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화상회의의 참여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
제21조(경계태세의 발령 및 해제)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부대의 장 및 경찰관서의 장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 1.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 가. 연대장급(해군·공군의 경우에는 독립전대장급을 말한다) 이상의 지휘관 나. (생략) 2. (생략) ②·③ (생략)	제21조(경계태세의 발령 및 해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1. ----- 가. 여단장급----- ----- ----- 나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32조(국가중요시설의 경비·보안 및 방호) <u><신설></u>	제32조(국가중요시설의 경비·보안 및 방호) ①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(소유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방호를 위하여 다음 각

	<u>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체방호인력으로 운용하여야 한다.</u> 1. 청원경찰 2. 특수경비원 3. 다른 법령에 따라 <u>개인화기(個人火器)</u>를 휴대 및 사용할 수 있는 인원
국가중요시설의 경비·보안 및 방호를 위하여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(소유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, 시·도경찰청장, 지역 군사령관 및 대대 단위 지역책임 부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<u>관리자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----- -----
1. 관리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	
가. <u>청원경찰, 특수경비원,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 등 방호인력, 장애물 및 과학적인 감시 장비를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체방호계획의 수립·시행.</u> 이 경우 자체방호계획에는 관리자 및 특수경비	가. 제1항에 따른 자체방호인력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업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는 통합방위법령과 시설의 경비·보안 및 방호 업무에 관한 직무교육과 <u>개인화기(個人火器)</u>를 사용하는 실제의 사격훈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나. (생략) <u><신 설></u>	----- ----- ----- ----- <u>개인화기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나. (현행과 같음) 다. 제1항에 따른 자체방호인력 및 기타 직원에 대한 화생방 방호물자의 확보 등 필요한 대비책의 마련
2.·3. (생략)	2.·3.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방부 합동참모본부	
연 락 처	(02) 748 - 3459